부산광역시체육회
수탁체육시설 운영 규정

부산광역시체육회 수탁체육시설 운영 규정

제정 2021.06.23.
개정 2021.12.24.
개정 2026.11.16.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 라 한다) 정관 제4조에 따라 수행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체육회가 수탁 받은 체육시설에만 적용한다.

제3조(운영조직) ①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예산집행 기관으로서 독립채산제 형태의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부장, 과장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고, 해당 체육시설에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수탁 체육시설 관리 · 운영규정) ① 제3조에 따라 두는 해당체육시설 운영조직(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 복무, 보수, 회계, 계약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체육시설에 별도의 관리·운영규정을 둔다.

② 해당 체육시설은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관리·운영규정을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하고,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체육회는 수탁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사업계획 및 예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 등 관리·감독의 권리를 갖고, 필요에 따라 체육회사무처 직원을 해당 체육시설에 파견할 수 있다.

② 해당 체육시설은 체육회의 지시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목적에 맞도록 관리·운영 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제6조(직원채용) ① 제3조의 운영조직 직원 중 센터장에 해당하는 직위의 직원은 체육회에서 채용을 실시하고, 응시자격 등 채용기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

하되 채용된 센터장의 임기는 2년(회장의 승인에 따라 1회 연장가능)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2026.11.16.>

② 센터장외 직원의 채용은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규정을 근거로 하여 해당 체육시설이 실시한다. 단, 해당 체육시설에서 센터장의 공석 등 채용의 업무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채용 한다.

③ 센터장을 비롯한 채용된 직원은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규정을 근거로 하여 해당 체육시설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제7조(인사교류) 수탁 운영하는 체육시설 간에 직원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고, 인사교류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8조(사업계획) 해당 체육시설은 사업연도 개시 30일 이내에 다음 연도 예산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하여야 한다. 단, 체육시설의 최초 수탁시에는 별도로 위탁기관이 정하는 기한내로 한다.

제9조(사용료 책정 및 감면) 체육시설 사용료 책정 및 감면은 해당 위탁기관에서 준용하는 각종 규정 등 법규를 근거하여 해당 체육시설별로 정한다.

제10조(결산보고) 수입, 지출, 사업내용 등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보고는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해산) ① 해당 체육시설의 수탁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해산 상황이 발생 할 경우 및 수탁 계약기간의 종료 이전에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체육시설 수탁 운영을 종료할 수 있다.

② 해산시 해당 체육시설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수탁운영 체육시설로의 이관 또는 체육회에서 관리 할 수 있다.

부 칙(2021.0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6조제1항 센터장의 임기제한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제정 당시 재직 중인 센터장의 임기는 보장한다.

부 칙(2021.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채용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2026.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6조제1항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채용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